

#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5 호
----------	--------

제출연월일	2004. 11. 1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종사자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입소순위 추가

-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입양아동, 세번째 자녀
- 모·부자 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의 자녀

### 나. 정년 조정

- 시설장 : 61세 ⇒ 60세, 종사자 : 58세 ⇒ 57세

### 다. 종사자 휴가 일수 조정

- 출산휴가 : 60일 ⇒ 90일
- 배우자 출산휴가 : 2일 ⇒ 3일

### 라. 부처명칭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 여성부장관

### 마. 어린이집 통·폐합 및 민간어린이집 전환

- 한내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 2002. 1. 1 삼천포어린이집으로 통·폐합
- 동금어린이집 ⇒ 2002. 1. 1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4. 9. 6 ~ 2004. 9.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소 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녀
2.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자녀
3. 여성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가정의 자녀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입양아동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7. 세번째 자녀
8. 기타 일반시민의 자녀

제7조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제1호중 “61세” 를 “60세”로 하고, 같은조제2호중 “58세” 를 “57세”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호중 “2월” 을 “60일”로 하고, 같은조제4호 휴가일수란중 “60일이내” 를 “90일이내”로 하며, 같은조같은호 같은란중 “2일” 을 “3일”로 한다.

제19조중 “보건복지부” 를 “여성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사천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사 천 어 린 이 집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
동 서 어 린 이 집	사천시 동동 360번지
대 방 어 린 이 집	사천시 대방동 322-29번지
삼천포 어 린 이 집	사천시 벌리동 587-28번지
동 부 어 린 이 집	사천시 향촌동 503번지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입소 순위) ① (생략)</p> <p>1. <u>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u> &lt;신 설&gt;</p> <p>2. <u>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 가정 자녀</u> &lt;신 설&gt; &lt;신 설&gt;</p> <p>3. <u>맞벌이 가정 자녀</u> &lt;신 설&gt;</p> <p>4. <u>일반가정 자녀</u></p>	<p>제6조(-----)①(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u></p> <p>2. <u>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자녀</u></p> <p>3. <u>여성부-----</u> -----</p> <p>4. <u>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u></p> <p>5. <u>입양아동</u></p> <p>6. <u>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u></p> <p>7. <u>세번째 자녀</u></p> <p>8. <u>기타 일반시민의 자녀</u></p>
<p>제7조(보육료)보육료는 <u>보건복지부장관이</u>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u>보건복지부장관이</u> 정한 표준보육단가를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u>여성부장관</u>----- ----- ----- ----- ----- ----- ----- ----- ----- -----</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생략)</p> <p>⑥ <u>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10조(-----) ① ~ ⑤(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제13조의2(정년) (생략)</p> <p>1. 시설장 : <u>61세</u></p> <p>2. 기타 종사자 : <u>58세</u></p>	<p>제13조의2(---) (현행과 같음)</p> <p>1. 시설장 : <u>60세</u></p> <p>2. 기타 종사자 : <u>57세</u></p>
<p>제14조(전보)시장은 <u>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u></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휴가) (생략) 1.(생략) 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u>연 2월</u>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생략) 4.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u>연60일</u>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 산	본인 배우자(처)	<u>60일</u> 이내 <u>2일</u>	-----	-----	<u>90일</u> 이내 <u>3일</u>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u>보건복지부</u> 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한다.			제19조(---)----- -----, ----- <u>여성부</u> ----- -----.		

<개정전>

[ 별표 1 ]

사천시어린이집명칭과위치

명 칭	위 치
한 내 어 린 이 집	사천시 벌리동 587-28번지
동 금 어 린 이 집	사천시 동금동 56-20번지
대 방 어 린 이 집	사천시 대방동 322-29번지
동 서 어 린 이 집	사천시 동동 360번지
삼천포 어 린 이 집	사천시 벌리동 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
사 천 어 린 이 집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
동 부 어 린 이 집	사천시 향촌동 503번지

<개정후>

[ 별표 1 ]

사천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사 천 어 린 이 집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
동 서 어 린 이 집	사천시 동동 360번지
대 방 어 린 이 집	사천시 대방동 322-29번지
삼천포 어 린 이 집	사천시 벌리동 587-28번지
동 부 어 린 이 집	사천시 향촌동 503번지

# 관계 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삭제<1999.2.8>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25조 (저소득층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재산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66조 (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0세  
6급이하 공무원 - 57세